

운할유 관련 개정된 소방법

한국운할유공업협회

1. 주요 내용

- 행자부고시 제1999-2호(위험물의 운반용기 및 이를 포장한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의 규격등에 관한 기준)
- 주요내용
 - 주의사항 표시(예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이상일 때)
화기엄금(비탕색 : 적색, 문자색 : 백색)
 - 표지크기 : 전체표면적의 2%(900cm² 초과시 900cm²로 한다)
 - 부착방법 : 용기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문자크기 : 시력 1.5인 사람이 5m에서 식별할 수 있는 크기
[용기 부피가 20,000cm³(20ℓ) 미만은 예외]
 - 적용특례 : 다른법 또는 다른법의 명령에 의한 표시가 이 고시에서 정한 취지에 적합한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시행일자 : 1999년 7월 1일

2. 소방법 제12조(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용기·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3.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 가연물] ①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이라 함은

별표 3의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으로서 별표 4의 것(이하 “특수 가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 15조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별표 3에서 정한 수량으로 한다.

[별표 3] 위험물(제2조 제1항 관련)

(1994년 7월 20일 개정)

유 별	성 질	품명 및 품목	지정수량	품명 및 품목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아염소산염류	50kg	질산염류	300kg
		염소산염류	50kg	요오드산염류	300kg
		과염소산염류	50kg	삼산화크롬	300kg
		무기과산화물류	50kg	과망간산염류	1,000kg
		브롬산염류	100kg	중크롬산염류	1,000kg
제2류	가연성고체	황린	20kg	철분	500kg
		황화린	50kg	마그네슘	500kg
		적린	50kg	금속분류	1,000kg
		유황	100kg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칼륨	10kg	유기금속화합물류	50kg
		나트륨	10kg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 제외)	
		알킬알루미늄	10kg	금속수소화합물류	300kg
		알킬리튬	10kg	금속인화합물류	300kg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 제외)류 및 알칼리토 금속류	50kg	칼슘 또는 알루미늄 의 탄화물류	300kg
제4류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류	50리터	제3석유류	2,000리터
		제1석유류	100리터	제4석유류	6,000리터
		알코올류	200리터	동식물류	10,000리터
		제2석유류	1,000리터		
제5류	자기 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류	10kg	니트로소화합물류	200kg
		질산에스테르류	10kg	아조화합물류	200kg
		셀룰로이드류	100kg	디아조화합물류	200kg
		니트로화합물류	200kg	히드라진유도체류	200kg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300kg	황산	300kg
		과산화수소	300kg	질산	300kg

비고 : ① 품명 및 품목란에서 품목은 “○○○류”로 표기된 위험물을 말한다.

⋮

⑨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라 함은 각각 다음의 물품 및 성상(1기압에 있어서의 성상을 말한다.)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가. 제1석유류 : 아세톤 및 휘발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나. 제2석유류 : 등유·경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다. 제3석유류 : 중유·클레오스트유 그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 용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라. 제4석유류 : 기계유·실린더유 그 밖의 액체로서 인화점이 200℃ 이상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는 인화성 액체량이 40 용량 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4.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적재방법)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적재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11.11, 95.5.27>

- ① 위험물의 운반용기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유황을 운반하기 위한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한 경우에 제 277조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운반용기에 적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포장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의 품명·수량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표시하여야 할 사항

- 1) 위험물의 품명
- 2) 위험물의 수량
- 3)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나. 위험물별 주의사항

- 1)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류 및 삼산화크롬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2) 제2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3) 제3류 위험물중 자연발화성 물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노출엄금”, 금속성 물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4)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다만,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으로서 그 운반용기 및 포장의 최대용적이 300밀리미터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제5류 위험물중 셀룰로이드류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디니트로나프탈린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기타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6) 제6류 위험물중 과염소산·과산화수소 및 질산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황산에 있어서는 “물기주의”

다. 위험물의 운반용기 및 이를 포장

한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 등의 규격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98.5.12>

- ④ 위험물을 운반도중 그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그 용기의 포장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⑤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적재하여야 한다.
- ⑥ 다음 각목의 위험물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덮개를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가. 제1류 위험물중 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류, 제4류 위험물중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중 과염소산·과산화수소에 대하여는 차광성이 있는 덮개로 할 것

나. 제1류 위험물중 무기과산화물류·삼산화크롬, 제2류 위험물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제3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방수성이 있는 덮개로 할 것

⑦ 위험물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위험물을 적재하는 경우와 별표 17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

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와 위험물은 함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불연성가스와 제4류위험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4.8.16]

5. 행정자치부고시 제 1999-2호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8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운반용기 및 이를 포장한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의 규격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월 12일

행정자치부장관

위험물의 운반용기 및 이를 포장한 외부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의 규격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험물의 운반용기 및 이를 포장한 외부(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표지등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위험물용기등의 저장·취급 및 운반시 위험물에 대한 식별과 주의사항의 인식을 쉽게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부착방법) 용기등의 걸면중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등의 방법으로 직접 표시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찰로

하여 달 수 있다.

제3조(표지의 크기) 전체 표면적의 2% 이상으로 하되 900c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cm²로 할 수 있다.

제4조(표지의 재질) 쉽게 파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문자의 크기) 문자는 시력이 1.5 이상인 사람이 5미터의 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다만, 용기등의 부피가 20,000cm³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표시내용 및 방법)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주의사항을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다만, 부피가 20,000cm³ 미만인 용기등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험물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다른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위험물의 품명은 소방법시행령 별 표3의 규정에 의한 “유별” 구분과 “품목 및 품명”, 그리고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한다.

2. 수량은 용기등의 용량을 기재한다.
3.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주의사항구분	바탕 색	문자 색
화기·충격주의	적 색	백 색
물기엄금	청 색	백 색
가연물접촉주의	백 색	흑 색
화기주의	적 색	백 색
공기노출엄금	백 색	흑 색
화기엄금	적 색	백 색
충격주의	흑 색	황 색
물기주의	청 색	백 색

제7조(적용의 특례)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의 명령에 의한 표시가 이 고시에서 정한 취지에 적합한 때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